

「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
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(안)
제 안 설 명 서

의안번호 제2003호

「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
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(안)에
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본 조례 개정이유는

- 시민감사 청구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
이상으로 하향하고,
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
시민참여옴부즈만 자격을 확대하여 시민감사청구
및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조례안 주요내용은

- 위원의 자격인정 대상범위를 확대하고, 시민감사 청구연령을 18세로 하향하고 연서기간 조항을 신설하였으며,
 - 감사청구심의회 심의위원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,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격을 확대하였습니다.
 - 시민감사청구와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개정되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-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2020. 11. 24.

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박근용